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65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 박덕흠 · 엄태영 · 서천호

조지연 • 고동진 • 김예지

김정재 • 이종배 • 구자근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상태, 훈련 기록, 부상여부 등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주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주마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

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법률 제 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에 한정한다.

6. 마주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제49조(마권의 구매제한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	
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제6호에 해</u>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소
	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
	의 마권에 한정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마주</u>